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0520

발의연월일: 2023. 3. 9.

발 의 자: 민홍철・박상혁・김두관

전재수 · 한준호 · 이상헌

박재호 · 김승남 · 정필모

김성주 · 김윤덕 의원

(11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인중개사 업무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인중개사 자격증 및 중개사무소 등록증 대여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 하고 있음.

그런데 다른 국가 자격과 달리 현행법에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및 중개사무소 등록증 대여 알선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자격증 또 는 중개사무소 등록증 대여행위가 더욱 조장될 뿐 아니라 자격증 대 여 알선행위를 처벌하고 있는 다른 국가 자격과의 형평에도 맞지 않 는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되는 현행법상의 요건 중 형의 선고와 관련된 부분이 명확하지 않아 이를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공인중개사 자격증 또는 중개사무소 등록증 대여 알선행위를 처벌하도록 하고, 자격 취소 요건을 명확히 하여 다른 국가 자격과의 형평성과 공인중개사 업무 수행에 윤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7조 등).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인중개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인중개사자격증의 양도·양수 또는 대여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개사무소등록증의 양도·양수 또는 대여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5조제1항제4호 중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을 "공인중개사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유예기간 중에 있는"으로 한다.

제49조제1항제1호 중 "자 또는"을 "자와"로, "대여받은 자"를 "대여받은 자 또는 이를 알선한 자"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제19조의 규정을"을 "제19조제1항 및 제3항을"로,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중개사무소등록증을"을 "중개사무소등록증을"로, "대여한 자 또는 다른 사람의 성명·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거나 중개사무소등록증을"을 "대여하거나"로.

"대여받은 자"를 "대여받은 자 또는 이를 알선한 자"로 하며, 같은 항 제8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제9호부터 제11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 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의 성명·상호를 사용 하여 중개업무를 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자격증 대여 등의 금지) ①	제7조(자격증 대여 등의 금지) ①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③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인중개사자격증의 양
	도·양수 또는 대여를 알선하여
	서는 아니 된다.
제19조(중개사무소등록증 대여	제19조(중개사무소등록증 대여
등의 금지) ① · ② (생 략)	등의 금지) ① · ② (현행과 같
	음)
<u><신 설></u>	③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개사무소등록증의 양
	도·양수 또는 대여를 알선하여
	<u>서는 아니 된다.</u>
제35조(자격의 취소) ① 시·도지	제35조(자격의 취소) ①
사는 공인중개사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	
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4. <u>공인중개사의 직무와 관련</u>
선고를 받은 경우	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
	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

② ~ ④ (생 략)

- 제4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 저는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도·대여한 <u>자 또는</u> 다른 사람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수·대여받은 자
 - 2. ~ 6의2. (생 략)
 - 7. 제1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하게 하거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대여한 자 또는 다른 사람의 성명·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거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수·대여받은 자

		의	집행	유예	를	선.	고받	고	ユ
		유여	미기긴	<u>.</u> 중	에	있는	<u>-</u>		
	2	~	4	(현행	과	같-	음)		
1	49	조('	벌칙)	1					
	1.								
	자와								
									
		<u>디</u>	비여빈	은	자	및	이를	일	선
	<u>한 자</u> 2. ~ 6의2. (현행과 같음) 7. <u>제19조제1항 및 제3항을</u>								
							-대	겨 히	-거
		나-		-대 여	받	슨	자	닷	는
		이틑	를 알	선한	자				

<u> <신 설></u>	8.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다
	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
	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
	무를 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
	의 성명·상호를 사용하여 중
	개업무를 한 자
<u>8.</u> ~ <u>10.</u> (생 략)	<u>9.</u> ~ <u>11.</u> (현행 제8호부터 제1
	0호까지와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